

# 삼성자산운용 의결권 행사 가이드라인

2018. 7月

# 의결권 행사에 관한 내부지침

## 제1조(목적)

이 지침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함) 제87조 및 동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함) 제91조 제4항 제1호에 의거하여 삼성자산운용 및 삼성자산운용이 집합투자업자로 되어 있는 투자회사 등(법 제184조에 의거 투자회사 등이 의결권 행사를 삼성자산운용에 위탁한 경우에는 삼성자산운용, 이를 총칭하여 이하 “회사”라 함)의 의결권행사에 관한 기준, 방법, 절차 등 의결권 행사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용어의 정의)

이 지침에서 정하지 않은 용어의 정의는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3조 (충실 의무)

회사는 고객과 수익자를 위하여 집합투자재산에 속하는 주식의 의결권을 충실하게 행사할 수 있도록 의결권의 행사여부, 내용 및 방법 등 의결권 행사와 관련된 주요 업무를 신의에 따라 성실하게 수행하여야 한다.

## 제4조(중립 투표)

- ① 회사는 다음 각 호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결의내용에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의결권을 행사하여야 한다.
1. 회사 및 회사와 영 제89조 제1항에서 정하는 이해관계가 있는 자 또는 회사에 대하여 사실상 지배력을 행사하는 자로서 영 제89조 제2항에서 정하는 자가 당해 집합투자재산인 주식을 발행한 법인을 계열회사로 편입하기 위한 경우
  2. 당해 집합투자재산에 속하는 주식을 발행한 법인이 회사와 계열회사 또는 회사에 대하여 사실상 지배력을 행사하는 관계로서 영 제89조 제3항에서 정하는 관계가 있는 경우

# 의결권 행사에 관한 내부지침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회사는 법인의 합병, 영업의 양도·양수, 임원의 임면, 정관변경,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항으로서 투자자의 이익에 명백한 영향을 미치는 사항(이하 "주요의결사항"이라 한다)에 대하여 제1항의 방법에 따라 의결권을 행사하는 경우 집합투자재산에 손실을 초래할 것이 명백하게 예상 되는 때에는 제3조에 따라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다.

다만,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에 따른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이하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이라 한다)에 속하는 회사는 집합투자재산으로 그와 계열회사의 관계에 있는 주권상장법인이 발행한 주식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방법으로만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다.

1. 그 주권상장법인의 특수관계인(「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7조 제1항 제5호 가목에 따른 특수관계인을 말한다)이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는 주식의 수를 합하여 그 법인의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15를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의결권을 행사할 것
2. 회사가 법 제81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라 같은 항 제1호 가 목의 투자한도를 초과하여 취득한 주식은 그 주식을 발행한 법인의 주주 총 회에 참석한 주주가 소유한 주식수에서 집합투자재산인 주식수를 뺀 주식수의 결의 내용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도록 의결권을 행사할 것

③ 회사가 영 제86조 제1항 제1호 각 목에 따라 계열회사의 전체 주식을 각 집합투자기구 자산총액의 100분의 5을 초과하여 취득하는 경우에는 집합투자기구 자산총액의 100분의 5을 기준으로 집합투자재산에 속하는 각 계열 회사별 주식의 비중을 초과하는 계열회사의 주식에 대하여는 결의 내용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도록 의결권을 행사해야 한다.

④ 제2항 전단의 규정은 법 제234조 제1항에 의거 상장지수집합투자기구에 대하여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 제5조(행사금지)

회사는 법 제81조 제1항 및 제84조 제4항에 따른 투자 한도를 초과하여 취득한 주식에 대한 의결권을 행사할 수 없다.

## 제6조(교차행사 및 면탈행위 금지)

회사는 제3자와의 계약에 의하여 의결권을 교차하여 행사하는 등 제4조 제1항, 제2항 또는 제5조 규정의 적용을 면하기 위한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 의결권 행사에 관한 내부지침

## 제7조(행사주체)

회사는 직접 또는 수탁회사에 대한 운용지시를 통하여 의결권을 행사하며, 필요한 경우 집합투자재산인 주식을 발행한 법인에게 위임장을 제공하여 의결권을 행사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위임장에는 의안에 대한 찬부를 반드시 기재하여야 한다.

## 제8조(서면행사 등)

회사는 집합투자재산인 주식을 발행한 법인의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서면 또는 전자수단 등을 이용하여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다.

## 제9조(불통일 행사)

회사는 각 집합투자재산 간에 통일하여 의결권을 행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통일하여 행사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의결권을 불통일하여 행사할 수 있다.

## 제10조(주주총회 개최 파악)

- ① 회사는 집합투자재산인 주식을 발행한 법인의 주주총회 일시, 장소 및 의안 등을 행사 전에 충실하게 파악하여야 한다.
- ② 회사는 수탁회사가 주주총회 소집통지서를 수령한 경우 이를 즉시 회사에 통지하도록 상호 협조체제를 유지하여야 한다.

## 제11조(의결권 행사 대상)

회사는 펀드 및 투자일임재산에서 보유 중인 주식 전체에 대해 의결권을 행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효율적인 의결권 행사를 통해 수탁자 책임을 충실하게 이행할 목적으로 보유 비중이 회사의 보유주식전체 대비 1000분의 5 미만의 경우는 행사하지 아니할 수 있다.

# 의결권 행사에 관한 내부지침

## 제12조(의결권 행사 권한)

- ① 의결권의 행사여부, 내용 및 방법 등 의결권행사와 관련된 주요사항은 스투어드십 업무 부서장의 의견을 기초로 하여 스투어드십 업무 담당 본부장이 결정한다.
- ② 중요한 사안의 심의 또는 의결이 필요한 경우 수탁자책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운영할 수 있으며 이와 관련하여 세부절차는 별도 규정에서 정한다.
- ③ 회사는 필요시 외부 의결권 행사 자문기관의 안건 분석과 의견을 받을 수 있다. 다만 이 경우에도 최종 의결권 행사 방향은 회사의 책임하에 결정한다.
- ④ 스투어드십 업무 부서장은 필요한 경우 집합투자 재산인 주식을 발행한 법인에게 통지 또는 공고된 목적 사항 이외에 주주총회 의안과 관련된 추가 자료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으며, 그 밖에 외부 전문기관(자회사 리서치 센터를 포함한다) 등으로부터 필요한 의견을 청취하거나 관련 자료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 ⑤ 스투어드십 업무 부서장은 회사가 의결권 행사 방향을 결정함에 있어 고객과 수익자에 대한 수탁자책임(fiduciary duty)을 이행할 수 있도록 별첨의 "의결권 행사 가이드라인"을 충실한 내용으로 작성, 관리한다.

## 제13조(의결권의 행사)

- ① 스투어드십 업무 부서장은 본 지침에 의거하여 결정된 바에 따라 실제로 의결권을 행사한다. 이를 위하여 해당 법인이 정한 양식에 따라 위임장을 작성하고 원칙적으로 주주총회 1영업일 전까지는 의결권 행사에 필요한 서류를 해당 법인에 제출한다.

## 제14조(기록 유지)

- ① 법 제87조 제7항 및 영 제90조 제1항에서 정한 바에 따라 회사의 각 집합투자재산에서 해당 집합투자기구 자산총액의 100분의 5 또는 100억원 이상을 소유하는 주식을 발행한 법인을 의결권공시대상법인이라 한다.
- ② 회사는 의결권공시대상법인에 대한 의결권 행사 여부 및 그 내용(의결권을 행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사유)을 법 제90조에 따른 영업보고서에 기재하여 기록·유지하여야 한다.

# 의결권 행사에 관한 내부지침

## 제15조(의결권행사 관련 사항의 공시)

- ① 스투어드십 업무 부서장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의결권 행사 관련 사항을 공시한다.
  - 1. 법 제87조 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주요 의결사항에 대하여 의결권을 행사하는 경우  
: 의결권의 구체적인 행사내용 및 그 사유
  - 2. 의결권 공시 대상법인에 대하여 의결권을 행사하는 경우  
: 법 제87조 제7항에 따른 의결권의 구체적인 행사내용 및 그 사유
  - 3. 의결권 공시 대상법인에 대하여 의결권을 행사하지 아니한 경우  
: 법 제87조 제7항에 따른 의결권을 행사하지 아니한 구체적인 사유
- ② 회사는 제1항에 따라 의결권 행사 여부에 관한 사항 등을 공시하는 경우에는 투자자가 그 의결권 행사 여부의 적정성 등을 파악하는데 필요한 자료로서 다음 각 호의 자료를 함께 공시하여야 한다.
  - 1. 의결권 행사와 관련된 회사의 내부지침
  - 2. 회사가 의결권 행사와 관련하여 집합투자기구 별로 보유하고 있는 주식 및 증권에탁증권 수
  - 3. 회사와 의결권 행사 대상 법인의 관계가 영 제89조 제1항 또는 제2항 에서 정하고 있는 관계에 해당하는지 여부
- ③ 법 제87조 제8항에 따른 의결권 행사의 공시는 영 제91조 제2항에 해당 하는 방법에 따른다.
- ④ 회사가 본 지침에 따라 의결권 행사를 한 경우 회사의 웹사이트에 최소 년 1회 의결권 행사 내역을 공개한다.

## 제16조(의결권 행사 내용의 공개 시기)

의결권 행사 내용은 사후 공개를 원칙으로 한다. 다만 다른 법규나 계약에서 달리 정한 바가 있는 경우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 제17조(내부통제)

수탁자책임위원회는 회사의 의결권 행사가 관련 법규 및 이 지침을 준수하고 있는지의 여부를 정기적으로 점검한다.

# 의결권 행사 세부 가이드라인

---

## I. 이사회 및 이사

### 1. 이사회 구성

- 1.1 다양한 경력과 능력을 갖춘 이사를 선임할 수 있도록 하는 안에 찬성한다.
- 1.2 이사회 의사결정권 비중을 높이는 안에 대해 일반적으로 찬성한다.

### 2. 이사회 내 위원회 설치

이사회 내 위원회를 설치하는 안에 대해 이사회 운영의 효율성·독립성을 저해할 특별한 우려가 없다면 찬성한다. 또한 위원회 구성원 중 사외이사 비중을 높이는 안에 대해서 일반적으로 찬성한다.

### 3. 이사의 선임

- 3.1 독립적인 이사추천위원회에서 추천한 이사 후보에 대해서 찬성 투표를 원칙으로 하며, 다음의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후보에 대해서는 반대할 수 있다.
  - 법령상 이사로서의 결격사유가 있는 경우
  - 과도한 겸임으로 이사로서 충실한 의무수행이 어려운 경우
  - 주주 전체의 이익이 아닌 특정 주주의 이익을 지속적으로 추구하거나 추구할 가능성이 크다고 판단되는 경우
  - 회사 가치의 훼손, 주주 권익의 침해에 현저한 책임이 있거나, 향후 이에 대한 우려가 클 것이라고 판단되는 경우
- 3.2 이사 후보의 수가 선임예정 이사의 수를 초과하는 경우 장기적으로 주주가치 증대에 더 적합하다고 판단되는 후보에 대해 찬성한다.

# 의결권 행사 세부 가이드라인

## 4. 사외이사의 선임

4.1 이사의 선임 기준을 준용하되, 독립성 결격 사유, 전문성 등을 평가하여 의결권을 행사한다.

4.2 다음의 독립성 저해 등의 결격사유가 있는 경우 일반적으로 반대한다.

- 최대주주 혹은 주요주주 및 그의 특수관계인의 경우 (단 합작투자 관계下 주요주주가 후보자를 추천한 경우는 사안별로 판단함)
- 해당 회사 또는 계열사의 임직원이거나 그의 직계 존비속 또는 최근 2년 (금융회사의 경우 3년) 이내에 해당 회사의 임직원이었거나 그의 직계 존비속의 경우
- 해당 회사나 그 최대주주 또는 계열회사와 중요한 거래관계, 사업상 경쟁관계 및 협력관계 등 이해관계가 있는 임직원이거나 최근 2년 이내에 임직원이었던 경우
- 해당 회사 사외이사로서 신규 임기를 포함하여 연속 재임하는 연수가 7년(금융업종은 6년)을 초과하는 경우
- 최근 3년 이내에 이사회 및 위원회 참석률이 75% 미만인 경우
- 그 밖에 법률자문·경영자문 등의 자문계약을 체결하고 있는 등 회사와의 이해관계로 인해 사외이사로서 독립성이 중대하게 훼손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단 자문계약 회사 내에서 사외이사 후보자의 지위/역할 등을 고려)

4.3 다음의 전문성 요건 중 하나 이상을 갖추지 못한 사외이사 후보에 대해 일반적으로 반대한다.

- 전문경영인(「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또는 이에 상당하는 외국법령에 따라 외부감사를 받는 법인의 임원 이상 이거나 이와 동등한 직위에 있는 자 또는 이었던 자)
- 변호사 또는 공인회계사로서 그 자격과 관련된 업무에 5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자
- 금융, 경제, 경영, 법률, 회계 분야의 석사학위 이상의 학위를 가진 자로서 연구기관 또는 대학에서 해당 분야의 연구원 또는 전임강사 이상의 직에 5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
-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 금융감독원,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한국거래소 또는 같은 법 제9조제17항에 따른 금융투자업 관계기관(금융투자 관계 단체는 제외)에서 임원으로 5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
- 그 밖에 이사회 또는 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회가 상기 자격과 동등한 자격을 갖춘 것으로 인정하는 자



# 의결권 행사 세부 가이드라인

## 5. 이사회 의장과 CEO의 분리

이사회 의장과 최고경영자(CEO) 및 최고재무책임자(CFO)의 직책을 분리하는 안에 찬성하고, 분리되어 있는 경우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합치는 안에 대해서는 일반적으로 반대한다.

## II. 감사 및 감사위원회

### 6. 감사 및 감사위원회 위원의 선임

다음 결격사유 중 하나 이상에 해당하는 감사위원회 위원이나 감사 후보에 대해서는 일반적으로 반대한다.

- 법령상 감사의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 최근 5년 이내에 감사위원회 위원이나 감사로 재직하는 동안 그 재직 중인 회사가 외부 감사인에게 지급한 용역보수 중 기업공개(IPO), 도산, 구조조정, 세무 조정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와 관련하여 발생한 비용을 제외한 나머지 비 감사 용역 보수가 감사 용역 보수를 현저히 초과하여 감사 직무의 독립성을 저해할 것이라 판단되는 경우 (단 필요시 사업 특성 등에 대한 고려)
- 최근 5년 이내에 감사위원회 위원이나 감사로 재직하는 동안 그 재직 중인 회사가 적정 이외의 외부감사 의견을 받거나 외부감사와 관련하여 중요한 행정적 · 사법적 제재를 받은 경우

## III. 보상

### 7. 임원, 감사의 보수한도

7.1 이사회가 제시하는 이사 및 감사 보수 한도 안에 대해서 일반적으로 찬성하나, 그 수준이 회사 및 이사회 규모, 경영 성과 등을 고려하여 과도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반대한다. 특히 적자 또는 순이익 감소 기업의 인당 및 총 보수한도 증액에는 원칙적으로 반대한다.

7.2 보상 한도, 내역 및 체계 등의 임원별 공시를 확대하는 안에 대해 일반적으로 찬성한다.

# 의결권 행사 세부 가이드라인

## 8. 성과 보상

- 8.1 경영진의 성과와 보상을 연계하는 안에 찬성하고, 경영진의 성과 평가에 재무적 업적 외에 기업의 사회적 책임 이행 등을 고려하는 안에 찬성한다
- 8.2 경영진에게 제공되는 현금 보수 중 일부를 주식으로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안에 찬성한다
- 8.3 경영 성과와 관계없이 무조건적으로 보장된 성과급 지급 안건에 대해서는 일반적으로 반대한다
- 8.4 경영 성과 제고, 우수 인력 확보/유지 목적으로 임직원에게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하는 안에 대해서는 일반적으로 찬성하나,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반대한다.
  - 총 발행주식 대비 주식매수선택권의 규모가 과도한 경우 (발행 주식의 3% 이상)
  - 희석률이 과도한 경우 (10% 이상 희석되는 경우)
  - 주주 동의 없이 행사가격 등 계약조건을 조정한 사실이 있는 경우

## 9. 퇴직 보상

이사에 대한 퇴직보상금 지급 안에 대해서는 과거 경영실적, 회사 재무상황, 퇴직사유 등을 고려, 과도한 경우 반대한다.

## IV. 재무제표 및 이익잉여금의 처분

### 10. 재무제표의 승인

재무제표의 승인 안에 대해 외부감사의견이 “적정”이 아닌 경우에는 반대한다.

### 11. 배당

- 11.1 배당금 지급 안에 대해서는 회사의 이익규모, 재무상황, 투자계획, 동종업계 배당수준 등을 고려하여 지급 수준이 주주가치를 훼손할 정도로 과소하거나 과다하지 않다고 판단되는 경우 찬성한다.
- 11.2 중장기 회사의 성장성을 훼손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중간 또는 반기 배당을 허용하는 안에 대해서 일반적으로 찬성한다.

# 의결권 행사 세부 가이드라인

## V. 자본 구조

### 12. 주식의 발행

12.1 정관상 발행예정주식총수를 증가시키는 안에 대해 자본금의 증가 등 목적이 합리적인 경우에 찬성한다.

- 임직원의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에 대비한 증자
- 경영상 위험을 벗어나기 위한 증자
- 기타 증가의 목적이 명확하고 주주의 이익에 부합한다고 판단되는 경우

12.2 신주를 제3자에게 배정하는 안에 대해서는 발행 목적, 규모, 대상 등이 합리적이고 공정하며, 주주가치를 훼손하지 않는 경우에 찬성한다

### 13. 종류 주식

주주가치를 훼손하거나 정당한 M&A를 부당하게 방어하기 위한 종류주식의 발행에는 원칙적으로 반대한다. 다만 회사 자금조달원의 다양화를 기하거나 악의적인 적대적 M&A에 효율적으로 대응함으로써 장기적으로 회사 및 주주가치 제고에 기여할 것이라 판단되는 경우에는 찬성한다

### 14. 자기 주식

자기주식 취득 안에 대해서는 회사의 이익규모, 재무상황, 과거 취득의 적정성, 경영권 관련 사항 등을 고려하여 합리적이고 정당한 사유가 제시되는 경우 찬성한다.

### 15. 자본금 감소

자본금 감소의 안에 대해 다음 중 하나 이상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반대한다.

- 기업회생, 자본조달, 구조조정을 위해 불가피한 경우
- 상장폐지를 피하기 위해 시행하는 경우
- 중장기 관점에서 주주가치를 훼손하지 않는 유상감자인 경우

# 의결권 행사 세부 가이드라인

## 16. 주식분할, 병합

주주 평등의 원칙에 따라 비례적으로 발행주식수가 증가 또는 감소하는 주식분할, 병합에 대해서는 일반적으로 찬성하며, 법정 주식수가 비례적으로 감소하지 않는 주식병합의 경우에는 사안별로 주주가치 훼손 여부 등을 검토하여 결정한다.

## 17. 주식연계 채권

전환사채, 신주인수권부사채 등 주식연계채권을 발행하는 안에 대해서는 중장기 회사 가치에 대한 영향을 최우선으로 판단하여 결정하며, 발행 목적의 합리성, 발행 규모, 기존 주주권의 희석 정도, 전환가격, 이해상충 등을 고려하여 사안별로 판단한다.

## VI. 주주 권리

### 18. 주주총회의 소집 · 결의

주주총회 소집 공고 기간의 변경, 일시 · 장소의 변경, 소수주주권 행사 요건의 변경, 의결 주체의 변경 등 사안과 관련 주주의 권리가 침해될 수 있는 안건에 대해서는 일반적으로 반대한다.

### 19. 의결권 행사

주주총회의 의사정족수나 의결정족수를 변경하는 안에 대해서는 합리적이고 정당한 사유를 제시하는 경우에 한해 찬성하고, 전자투표나 서면투표 방식으로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하여 주주권 행사가 용이하게 하는 안에 대해 찬성한다.

### 20. 정관의 변경

목적사업 추가, 사명 변경, 주총 결의 요건/주체의 변경 등의 안건은 중장기 회사 가치 또는 주주권리 침해 요소 등을 고려하여 사안별로 판단, 결정한다

# 의결권 행사 세부 가이드라인

## Ⅶ. 기 타

### 21. M&A, 영업 양수도, 회사 분할 및 분할 합병

사안별로 검토하되, 다음 사항을 고려하여 중장기적으로 회사 및 주주의 가치를 훼손하는 안에 대해서는 반대한다.

- 인수 합병, 영업 양수도 등의 대금 또는 비율 적정성
- 절차 및 정보 공개의 적정성
- 사업의 전망과 향후 기대되는 시너지 효과
- 환경, 사회, 기업지배구조 등에 미치는 영향

### 22. 적대적 인수 합병 및 위임장 대결

장기적 측면에서 회사 및 주주 가치에 미치는 영향을 최우선으로 고려하여 사안별로 검토하되, 종업원, 서플라이 체인상의 유관 기업뿐 아니라 국가 경제 및 사회에 미치는 영향 등의 요소도 함께 고려하여 결정한다.

### 23. 환경, 사회적 이슈

사안별로 검토하여 의결권을 행사하되, 환경, 사회적 요소의 관리가 회사의 명성 뿐 아니라 중장기 기업의 운영, 관련 비용 등 회사의 중장기 가치에 큰 영향을 미침을 충분히 고려한다.

환경, 사회적 이슈와 관련한 법규, 규정 준수 여부를 충분히 검토하여 의결권을 행사하며 관련 리스크의 방지, 제거 등을 위한 안건 또는 이에 대한 공시 강화 안건에 대해 일반적으로 찬성한다.

※ 본 가이드라인에서 구체적으로 정하고 있지 않은 사항 또는 이사의 선임 등과 관련하여 신탁재산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는 수탁자책임위원회에 심의를 요청하여 의결권 행사 방향을 결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수탁자책임위원회는 사안별로 고객의 이익을 극대화하는 방향으로 의사 결정을 하여야 하며, 그러한 결정은 본 가이드라인에서 정하고 있는 세부사항과 일치하지 않을 수도 있다.

Stay Ahead™

삼성자산운용 주식회사

06620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대로74길 11 대표전화 : 02-3774-7600 콜센터 : 080-377-4777(상담시간안내 : 평일 오전 8시~오후 5시)

삼성자산운용

